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309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2
가. 제도 개요	2
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식 변경(정부안, 김영진의원안) ..	11
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소득에 연금계좌소득 추가(정부안, 김영진의원안)	24

I. 개요

1.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30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영진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8. 22.

(3) 회 부 일 : 2025. 8.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음.

그런데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과세가 이연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어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이 감소하고 이중과세 문제 등이 지적되었음.

이에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및 제129조제5항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가. 제도 개요

□ 현행법 제57조의2¹⁾는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 중 간접투자회사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²⁾의 개념 및 설립형태에 따라 크게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펀드의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펀드-투자자 간 이중과세 해소를 위하여 펀드를 납세주체에서 제외함으로써 펀드 단계에서는 과세를

1) 「소득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다.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일반적으로 ‘펀드’로 불리며, 펀드와 집합투자기구는 동일한 것으로 봄

하지 않고, 투자자 단계에서 과세를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득금액이 펀드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소득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³⁾하여 펀드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음.

한편, 투자자 단계에서 과세 시 「소득세법」⁴⁾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펀드로부터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의 비교]

구 분	투자회사(회사형 펀드)	투자신탁(신탁형 펀드)
설립 형태	주식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예정된 판매 회사에 의하여 발기 설립되어 모집)	신탁계약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생성)
발행 증권	주권(주식)	수익증권
투자자 지위	주주	수익자
구조적 감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감독이사가 감시	신탁업자가 운용행위를 감시
설립 절차	사전에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 모집	일반적으로 자금 모집 후 감독기관 신고
설립 비용	설립관련 상법에 준하는 등기업무 및 법인설립과 관련한 등록세 등 부담	설립과 관련된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펀드 과세 체계	펀드가 배당가능 이익을 90% 이상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배당 소득금액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 면제 (「법인세법」 제51조의2)	투자신탁을 별도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납세 주체에서 제외(도관 취급)하여 과세 면제

3) 「소득세법」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 「법인세법」

구 분	투자회사(회사형 펀드)	투자신탁(신탁형 펀드)
소득에 대한 세제	소득구분은 배당소득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 없음	소득구분은 배당소득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 (단, 금융회사의 경우 제외) ⁵⁾ 연 1회 결산 및 원천징수 의무

자료: 2025 금융상품과 세금, 김용빈 외 2인, p.368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2005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는데, 이는 거주자가 직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7조6)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국제적 이중과세를 제거할 수 있으나, 펀드를 통해 해외금융상품 등에 투자하는 경우 펀드 단계와 투자자 단계에서 모두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함에 따라⁷⁾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금으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6)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text{공제한도금액} = A \times \frac{B}{C}$$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7) ① 펀드 단계에서는 펀드가 납부할 법인세액이 없어(투자신탁의 경우 법인세법상 실체가 없는 도관으로서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고, 투자회사의 경우 투자자에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을 하면 전액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게 되므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됨)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② 투자자 단계에서는 외국세액의 납부 주체는 펀드로서 투자자가 아니므로 투자자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불가능하였음. 2022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기획재정부 위원회 전문위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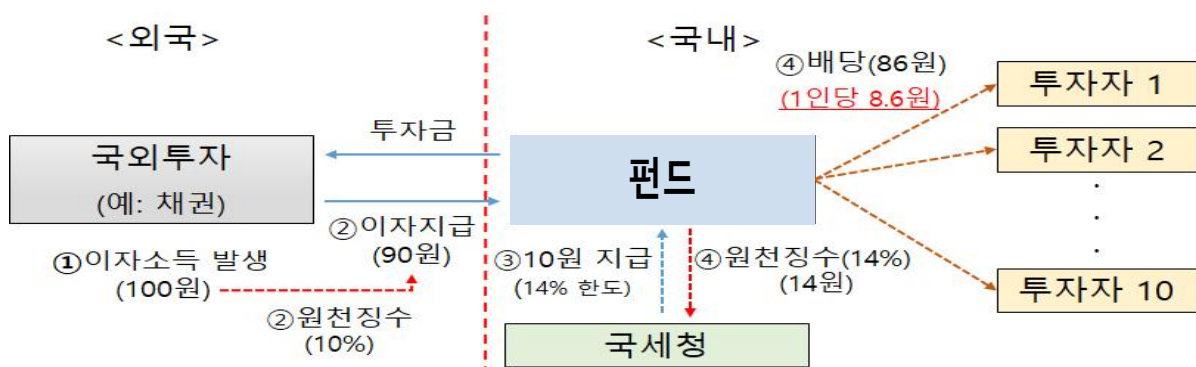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음.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구분	시행 시기	방식
방식 I	2006~2024	펀드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을 선환급 받아 세전소득 환원 후 투자자 소득 분배 시 원천징수
방식 II	-8)	국세청의 환급절차 없이 펀드가 배당 시 국내와 외국 세율 차이만큼 투자자별 '세전소득'을 고려하여 원천징수
방식 III	2025~	국세청의 환급절차 없이 펀드가 배당 시 국내와 외국 세율 차이만큼 투자자별 '세후소득'을 고려하여 원천징수

투자자의 펀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과 관련하여 방식 I 은 펀드의 해외소득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투자자별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펀드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을 선환급(국내원천 징수세율 14% 한도)받아 세전소득으로 환원 후 투자자에게 소득을 분배 시 원천징수하는 방식이었음.

[방식 I 외국납부세액공제 예시]



주: 외국 이자소득세율: 10%, 국내 배당소득세율 14%, 이익의 100% 배당 가정
자료: 기획재정부

8) 2021년 세법 개정 당시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로 설정하였으나, 이후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이 방식III으로 개정되어, 실제로는 시행되지 못하였음

방식 I 에 의하면, 외국에서 이자소득 100원이 발생하여 10%를 원천징수하고 90원을 펀드에 송금을 하는 경우, 소득발생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 시 국세청은 외국납부세액 10원을 환급함. 이후, 국내에서 펀드가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세 14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86원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됨으로써 투자자는 국내세율 14%로 과세됨.

그러나 방식 I 에 대하여, 국외원천소득의 국내 과세여부와 무관하게 외국납부세액을 미리 환급함에 따라 국고로 외국납부세액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⁹⁾ 2단계 절차(先 공제 또는 환급→後 원천징수)가 번거로워 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따른 대응으로 간접투자회사·투자신탁 등이 거주자에 소득을 지급할 때, 국내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과의 차이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식Ⅱ를 규정하는 개정안이 2021년 12월 의결되었음.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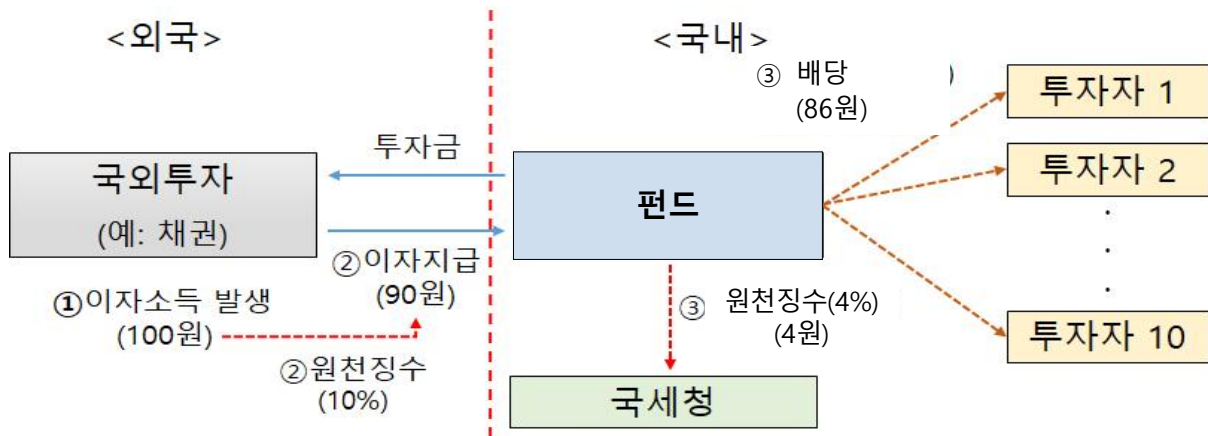
9) 면세 국내법인은 국내과세가 없음에도 정부가 외국납부세액을 지원하거나, ISA 계좌(국내세율 9%) 및 연금계좌 내 펀드를 통해 해외투자하는 경우 정부가 외국 납부세액을 일부 보전하는 결과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음. 기획재정부 자료

10)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⑤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제5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방식 II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예시]



주: 외국 이자소득세율: 10%, 국내 배당소득세율 14%, 이익의 100% 배당 가정
자료: 기획재정부

투자신탁이 거주자에 지급하는 배당으로서 위 그림과 동일하게 외국에서 이자소득 100원이 발생하여 10%를 원천징수하고 90원을 펀드에 송금을 하게 되면, 국세청의 환급절차 없이 펀드가 배당 시 국내와 외국 세율 차이(4%=14%-10%)만큼만 4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86원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됨으로써 투자자는 국내세율 14%로 과세됨.

그러나 방식 II에 따를 때, 금융기관은 투자자별 펀드 소득 발생 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차액을 원천징수하게 되는데¹¹⁾,

방식 II

$$\text{원천징수세액} = (\text{투자자별 세전소득} \times \text{원천징수세율}) - (\text{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

11) 참고

방식 I은 펀드의 해외소득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자별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펀드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을 선환급(국내원천징수세율 14% 한도) 받아 세전소득으로 환원 후 투자자에게 소득 분배, 원천징수

이를 위해서는 개별 펀드·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과 동 세액납부 전 소득이 계산되어야 함. 그러나 복수 국가·자산에 분산투자되고 투자자 변동 및 투자자산 배당 등이 수시로 발생하는 펀드의 성격상 업계는 투자자별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세전 기준가격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방식 Ⅲ은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한 원천징수 계산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펀드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펀드 세후 기준가격으로 계산하되, 펀드 세전 기준가 및 실제 외국납부세액으로 계산했을 때(방식Ⅱ)와 동일한 원천징수세액이 나오도록 외국납부세액 감액비율¹²⁾을 설정·적용하여, 조정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였음.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작은 경우

$\frac{\text{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text{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 \text{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1 - \text{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III(현행, 2025년~)

$$\text{원천징수세액} = (\text{투자자별 세후소득} \times \text{원천징수세율}) - (\text{투자자별 조정외국납부세액})$$

이를 고려하여 현행법은 ①(국내 $\geq$ 외국원천징수세율) 방식Ⅱ와 방식Ⅲ이 각각 세전 과세표준(100)과 세후 과세표준(90)으로 다른 기준을 택하더라도 방식Ⅱ와 방식Ⅲ의 원천징수세액이 같게 되도록 방식Ⅲ의 외국납부세액(10)에 조정비율(1-0.14)을 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방식Ⅱ와 방식Ⅲ 모두 원천징수세액은 4가 될 수 있도록 시행령상에 규정하였음.

[원천징수세액 산출 방식 비교(국내 $\geq$ 외국원천징수세율)]

구분	방식Ⅱ(세전소득 기준)	방식Ⅲ(현행, 세후소득 기준)
해외 배당금 (세전)	100	100
㉠ 외국납부세액 (10%가정)	$\Delta 10$	$\Delta 10$
과세표준	(세전 과세표준) 100	(세후 과세표준) 90
㉡ 국내배당소득세액 (14%가정)	$\Delta 14(=100 \times 0.14)$	$\Delta 12.6(=90 \times 0.14)$
㉢ 외국납부세액공제	10	$8.6[=10 \times (1-0.14)]$ (투자자별 조정외국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	$\Delta 4$	$\Delta 4$
총 부담세액 (=㉠+㉡+㉢)	$\Delta 14$	$\Delta 14$

②(국내 $<$ 외국원천징수세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의 방식으로 조정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하여 결과적으로 방식Ⅱ와 방식Ⅲ 모두 원천징수세액은 0이 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

[원천징수세액 산출 방식 비교(국내 < 외국원천징수세율)]

구분	방식Ⅱ(세전소득 기준)	방식Ⅲ(현행, 세후소득 기준)
해외 배당금 (세전)	100	100
㉠ 외국납부세액 (20%가정)	$\Delta 20$	$\Delta 20$
과세표준	(세전 과세표준) 100	(세후 과세표준) 80
㉡ 국내배당소득세액 (14%가정)	$\Delta 14(=100 \times 0.14)$	$\Delta 11.2(=80 \times 0.14)$
㉢ 외국납부세액공제	-	$11.2[=20 \times (0.7 - 0.14)]$ (투자자별 조정외국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	0 ($\because$ 원천징수세액<외국법인세액)	0
총 부담세액 (=㉠+㉡+㉢)	$\Delta 20$	$\Delta 20$

또한, 현행법은 위 내용과 함께 원천징수 시 공제되는 조정외국납부세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음.¹³⁾

13)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⑦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한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증권의 전부 환매 또는 전부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제5항제2호의 금액이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간접투자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식 변경(정부안, 김영진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57의2) ○ 종합과세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소득 및 공제금액 계산방식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이 포함된 경우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 <u>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u> ○ <u>공제한도</u> - $A \times \frac{B}{C}$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u>종합소득산출세액</u> B: <u>간접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u> * <u>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에 한정</u> C: <u>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u>	□ 공제금액 적용 방식의 변경 - (현행과 같음) - <u>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u> (김영진의원안) 현행과 같음 (정부안)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김영진의원안) - $A \times \frac{B}{C}$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u>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u> B: <u>간접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u> * <u>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에 한정</u> C: <u>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u> ○ (정부안) <삭 제>

* 김영진의원안 2025. 8. 22. 발의(의안번호 12309),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4)

[현행법상 원천징수단계 및 종합소득 신고단계에서의 원천징수금액 등에 대한 계산 방식]

구분	방식Ⅲ(현행)
원천징수 신고 단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 : ㉗-㉘ ㉗(이하 ‘기초징수액’):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¹⁾ × 원천징수세율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중 간접투자회사등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소득 ㉘ (이하 ‘원천징수 단계 공제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¹⁴⁾ × (① 또는 ②)¹⁵⁾ ①:(국내 원천징수세율 < 외국원천징수세율) $\frac{\text{국내원천징수세율}}{\text{외국원천징수세율}} - \text{국내원천징수세율}$ ②:(국내 원징세율 ≥ 외국원징세율) 1- 국내 원징세율 ※㉘의 한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 14%¹⁶⁾
종합소득 신고 단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㉙): 간접투자외국법인 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① 또는 ②)¹⁷⁾ ①:(국내 원천징수세율 < 외국원천징수세율) $\frac{\text{국내원천징수세율}}{\text{외국원천징수세율}} - \text{종합소득 한계세율}$ ②:(국내 원징세율 ≥ 외국원징세율) 1- 종합소득 한계세율 ㉙의 한도 : ㉗ × $\frac{\text{㉘}}{\text{㉙}}$ ㉗: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㉘: 간접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에 한정 ㉙: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응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日)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text{거주자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A \times B$$

- A: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B: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다)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text{거주자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A \times B \times C$$

- A: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액(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B: 간접투자회사등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간접투자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다)
- C: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의 비율(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작은 경우

$$\frac{\text{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text{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 \text{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1 - \text{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16) 배당소득에 대한 기본원천징수세율

17) 「소득세법 시행령」

- 개정안은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에 대한 간접투자 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이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 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 정부안은 현행 방식에 따를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중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한도 등(공제한도 및 공제한도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는 이월공제금액, 이하 “공제한도등”)의 계산이 어려우므로, “원천징수 단계 공제금액”을 환산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 중 공제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데 활용하도록 방식(방식Ⅳ)을 개정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 원천징수는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되는 완납적 원천징수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지 않고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2.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1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	---	---------------------------------

따로 정산과정을 거쳐야하는 예납적 원천징수로 구분됨.

또한 현행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종합소득 신고단계에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따른 공제한도등을 개인투자자별로 각각 계산·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이 종합소득 신고 시 현행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및 공제한도등을 직접 계산하고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 따른 공제한도 계산식의 국외원천소득(§57의2의 B)¹⁸⁾이 투자자에게 실제 지급(분배¹⁹⁾)되는 소득과 차이가 있어, 공제한도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18) 「소득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③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text{공제한도금액} = A \times \frac{B}{C}$$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B: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합계액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19) 분배는 간접투자회사등이 투자회사에 실제로 소득을 지급하는 단계를 의미하며, 배분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얻은 해외 투자소득을 투자회사에 이론적으로 할당하는 단계를 의미함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따른 개인투자자 공제한도등 계산의 어려움]

간접투자외납세액 공제 적용 예시(국내원천세율:14%, 한계세율:20%)									
단계	구분	국외원천소득(국외세율14%)			분 배 (C)	기초징 수액 (N)	원천징수 단계 공제 금액(D) =A*0.86	공제 한도 (E) =C*0.14	이월 공제액 (F) =D-E(≥0)
		세전	외납세액 (A)	세후(배분) (B)					
원천 징수	펀드1	1,000	140	860	300	42	120.4	42	78.4
	펀드2	500	70	430	200	28	60.2	28	32.2
(개정 전)									
단계	구분				산출 세액(J) =I*0.2	공제 금액(K) =(A ₁ +A ₂) *(1-0.2)	공제 한도 (L)	이월 공제액 (M) =K-L(≥0)	
		국내 소득 (G)	세후(분배) (H) =C ₁ +C ₂	과세 표준(I) =G+H					
종소 신고	합산	1,000	500	1,500	300	168	?	?	

주1: 펀드1,2에서의 원천징수금액은 0임

주2: 분배(C)의 값이 300으로 분배된 배경에는 현행법 시행령 제17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는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및 주식수로부터 그 분배 비율이 결정된 것이 아닌, 양도차손등의 발생으로 인해 분배되는 값이 작아진 것으로 보임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재가공

□ 현행법은 투자자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수령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전 국세청이 외국납부세액을 환급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①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값(기초징수액)(N)에서 원천징수 단계 공제금액(D)을 뺀 값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⁰⁾ 다만, D는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14%를 한도(E)로 하고 있음.²¹⁾

20)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⑤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제5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1)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 제1항제2호나목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예납적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지 않았을 경우, 종합소득신고 단계에서는 원천징수 당시와 동일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소득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K)을 계산하되 그 한도(L)는 종합소득산출세액 중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외국납부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이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으로 설정하고 있음.²²⁾

그러나, 공제한도등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임.²³⁾ 이는 종합소득 신고 시점에 공제한도등의 계산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초래함.

22) 「소득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③ 제1항에 따라 종합 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초과 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text{공제한도금액} = A \times \frac{B}{C}$$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B: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합계액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23) 예시된 바와 같이 국외원천소득의 구분이 2개의 펀드에 그치고 1차례의 양도차손만이 발생할 경우 공제한도의 계산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세율이 상이한 다수의 국가에 다수의 펀드를 통해서 분배받은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공제한도 계산의 복잡성은 더욱 커짐.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따른 공제한도 도입 취지의 불합치 예시]

공제한도 계산 사례('B/D > 1'인 경우)								
구분	국외원천소득(배당 등)			분배 (D) (양도차손3))	국내 소득	과세 표준	산출 세액	공제 한도
	세전	외납세액	세후(배분) (B)					
금액	1,000	100	900	300 (△600)	300	600	120 ¹⁾	180 ²⁾

* 주 1) 세율 20% 가정(소득세 실효세율은 약 17% 수준)
 2) 산출세액 × 국외원천세후소득 / 과세표준 = 120 × 900 / 600 = 180
 3) 국외주식 투자로 인한 양도차손(△600)에 따라 실제 분배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주1: 양도차손의 존재 외에도, ①다수의 금융사를 통해 해외간접투자하는 개인의 경우 위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다는 점, ②세후국외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공제한도를 둔 취지를 퇴색시키는 점이 문제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 한편, 위 사례와 같이 간접투자회사등이 국외원천소득을 국외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개인투자자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D)이 현행법상 그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B)²⁴⁾에 비해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 때,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한도는 실제 공제하는 금액에 비해 더 커지게 되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펀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 국내세율을 한도로 공제하겠다는 공제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²⁵⁾이 있음.

24) 「소득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③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text{공제한도금액} = A \times \frac{B}{C}$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B: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자의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합계액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25) 기획재정부 의견

□ 이에 개정안은 “원천징수 단계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환산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공제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정부안은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원천징수 단계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이와 같이 규정할 경우 별도의 공제한도를 둘 필요성이 없으므로, 공제한도와 관련된 현행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임.

특히, 소득세법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 단계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환산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²⁶⁾ 이에 대해 정부는 원천징수의 공제율과 종합소득단계의 공제율 차이에 관한 계산을 단순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이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따른 공제한도등의 계산이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현행과 같이 세후국외소득을 기준으로 한 공제한도 산식을 따를 경우, 개인투자자에게 실제 분배되는 소득과 공제액 한도가 대응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26) 예를 들어 종합소득대상자(t 연도)에서 분리과세대상자($t+1$ 연도)로 변경되는 경우, 종합소득 단계에서의 외납세액 공제금액(t 연도)을 각 증권사에 통지하여야 하나, 현행법에 따를 경우 통지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움.

[개정안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산출 방식 비교]

구분	방식Ⅲ(현행)	방식Ⅳ(개정안)
원천징수신고단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 : ㉗-㉘ ㉗: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¹⁾ × 원천징수세율(이하 ‘원징세율’)(이하 ‘기초징수액’)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중 간접투자회사등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소득 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원천징수 단계 공제금액’)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① 또는 ②) ①:(국내 원징세율 < 외국원징세율) $\frac{\text{국내원징세율}}{\text{외국원징세율}} - \text{국내원징세율}$ ②:(국내 원징세율 ≥ 외국원징세율) 1- 국내 원징세율 ※㉘의 한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 14%	현행과 같음 ※ 단, 추후 다.에서 논의될 바와 같이 연금계좌로부터 수령한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규정하여야 하므로, ㉘의 한도를 별도의 용어로서 ‘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등으로 정하였음
종합소득신고단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㉙): 간접투자외국법인 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① 또는 ②) ①:(국내 원징세율 < 외국원징세율) $\frac{\text{국내원징세율}}{\text{외국원징세율}} - \text{종합소득 한계세율}$ ②:(국내 원징세율 ≥ 외국원징세율) 1- 종합소득 한계세율 ㉙의 한도 : ㉗ × $\frac{\text{㉘}}{\text{㉚}}$ ㉗: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㉙): ㉘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원천징수 단계의 공제율과 종합소득 단계의 공제율 차이는 계산을 단순화 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예정 한도: 삭제 (“원천징수 단계 공제금액” 활용)

구분	방식Ⅲ(현행)	방식Ⅳ(개정안)
	㉠: 간접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 *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에 한정 ㉡: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다만, 현행법에 따라 “원천징수 단계 공제금액”을 활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상 규정된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에 대한 의미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한계세율에 대한 정의가 되어있지 않음.

따라서 법률 또는 시행령 상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상의 한계세율의 의미를 규정하거나, 별도의 조정계수를 두어 “원천징수 단계 공제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환산하는 산식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²⁷⁾

27) 정부는 이에 대해 현행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복잡한 한계세율 개념을 단순화하여, 각 개인이 위치하는 과표구간에 해당하는 세율로 조정하기 위한 계수를 시행령에 반영할 것이라는 입장임.

[공제금액(K') 계산을 단순화 위한 '한계세율'의 의미 명확화 필요 이유]

① (국내원징세율 ≥ 외국원징세율)

현행 "원천징수 단계 공제금액(A)" 계산 방식

=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현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따른 공제하는 금액(B)" 계산 방식

=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1-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 A를 활용하여 B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A \times \frac{1 - \text{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1 - \text{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B$$

∴ 한계세율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② (국내원징세율 < 외국원징세율)

현행 "원천징수 단계 공제금액(A)" 계산 방식

=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frac{\text{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text{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 \text{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현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따른 공제하는 금액(B)" 계산 방식

=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frac{\text{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text{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 \frac{\text{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text{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 A를 활용하여 B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A \times \frac{\frac{\text{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text{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 \frac{\text{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text{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frac{\text{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text{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 \text{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B

∴ 한계세율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 한편, 김영진의원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따른 공제금액의 한도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의 범주에 대한 개정 없이, 공제 한도를 종합소득산출세액 및 퇴직소득산출세액 중 전체 종합소득금액에

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의 비율만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제한도 등 공제방식의 개편과는 무관하게 연금계좌 인출
소득을 외납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현행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앞에서 기술한 공제한도등의 계산의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부안과 같이 공제한도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8

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정부안, 김영진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57의2) ○ 종합과세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이 포함된 경우 - 종합소득금액 - <신 설>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신 설> □ 원천징수세율 (§129) ○ 종합과세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 * 및 원천징수액 계산 방식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이 포함된 경우 ① 대상소득 : 배당소득 - 원천징수세액 : (간접투자회사소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원천징수세율)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 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신 설>	□ 공제 대상 소득 및 세액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 대상 소득에 퇴직소득금액 추가 - 퇴직소득금액 (정부안, 김영진의원안) ○ 대상 세액에 퇴직소득 산출세액 추가 - 퇴직소득 산출세액 (정부안, 김영진의원안) □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김영진의원안) -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소득

현 행	개정안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공제 한도 – 간접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14% – <신 설>	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계산 (정부안) ② 대상소득: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소득 중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으로 이자,연금,기타,퇴직소득 (정부안) – 원천징수세액: ①(연금계좌인출공제(이자,연금,기타,퇴직)소득× (이자,연금,기타,퇴직)원천징수세율) – ②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정부안) ① 연금계좌인출공제(이자,연금,기타,퇴직)소득× (이자,연금,기타,퇴직)원천징수세율

* 김영진의원안 2025. 8. 22. 발의(의안번호 12309),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4)

□ 개정안은 종합소득신고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허용되는 소득 및 세액의 범위에 퇴직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추가하고, 원천징수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소득에 연금계좌²⁸⁾

28)“연금계좌”란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를 말함.(「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퇴직연금계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등으로 분류하며, 이 중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이직·퇴직 시 수령한 퇴직금을 적립·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2023년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인원은 321만 5천명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하였음. (통계청 보도자료, “2023 퇴직연금통계 결과, 2024.12.16.”)

소득 중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고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요건(이하 “간접투자외납요건”)을 갖춘 소득을 추가하여 연금계좌 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요건을 갖춘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종합소득신고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소득을 종합소득으로만 한정하고 있음.²⁹⁾ 또한, 현행법은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요건을 갖춘 소득에 대해서 별도로 원천징수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되었음.³⁰⁾

□ 이에 개정안은 종합소득신고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를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확대하는 한편, 원천징수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소득을 현행 배당

29) 「소득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일 것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다.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

30)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 계좌는 투자소득 수령 시기(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3~5%가 부과되므로,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공제되지 않아 이중과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었음.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계좌는 투자 소득 수령 시기(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3~5%가 붙는다. 결국 연금계좌에서 미국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을 경우, 분배금을 받을 때 미국 정부에 원천징수당한 뒤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한국 정부에 또 연금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세금을 총 2번 내게 되는 것이다.” 연합뉴스, 「연금계좌 해외주식 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정부 대책 논의」

조선일보, “연금 계좌에서 해외주식 ETF 투자했더니 이중과세 날벼락”

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요건을 갖춘 소득에 더하여,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요건을 갖춘 소득”을 추가하려는 것임.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 소득의 확대) 개정안은 현행법 제57조의2와 관련하여, 현재 종합소득 및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만 적용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요건을 갖춘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적용 범위를 퇴직소득 및 퇴직소득 산출세액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사적연금과 관련하여 수령방식, 자금의 원천 및 소득 유형을 구분하여 금액의 성격에 따라 분류과세(퇴직소득), 분리과세(연금 및 기타소득) 또는 종합과세하고 있음.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의 구분]

소득 원천별 인출 순서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과세제외	과세제외
② 이연된 퇴직소득	→	연금소득 (10년 이하: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60%)	퇴직소득
③ 과세대상 금액(①+②)			
①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	→ 1,500만원 이하	연금소득 (분리과세, 3~5%)	기타소득 (15%)
② 연금계좌 운용소득	→ 1,500만원 초과	연금소득 (종합과세, 6~45%)	기타소득 (15%)

* 舊 개인연금(舊 조특법 §86, ~'00년): 연금외수령은 이자소득으로 구분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³¹⁾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분류과세 되지만 현행법은 종합소득에 대해서만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연금계좌 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요건을 갖춘 퇴직소득은 법 제57조의2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임.³²⁾

개정안은 종합소득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소득 및 세액에 퇴직소득 및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포함하여, 종전 포괄하지 못하였던 연금계좌 인출 시 이연퇴직소득 중 연금외수령하는 소득인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31)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 나.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2) 이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소득 및 세액이 종합소득 및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 단계에서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요건을 갖춘 소득에 대해서도 별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기인함.

② (연금계좌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요건을 갖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 방식]

구분	방식Ⅲ(현행)	방식Ⅳ(개정안)
원천징수 단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 : ㉗-㉘ ㉗: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¹⁾ × 원천징수세율(이하 ‘원징세율’)(이하 ‘기초징수액’)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중 간접투자회사등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소득 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원천징수 단계 공제금액’)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① 또는 ②) ①:(국내 원징세율 < 외국원징세율) $\frac{\text{국내원징세율}}{\text{외국원징세율}} - \text{국내원징세율}$ ②:(국내 원징세율 ≥ 외국원징세율) 1- 국내 원징세율 ※㉘의 한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 원천징수세액 이자소득 : ㉙₁-㉙₁ 연금소득 : ㉙₂-㉙₂ 기타소득 : ㉙₃-㉙₃ 퇴직소득 : ㉙₄-㉙₄ ㉙_{1,2,3,4}: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

구분	방식Ⅲ(현행)	방식Ⅳ(개정안)
		급받은 소득 중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이자, 연금, 기타, 퇴직소득(이하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 소득별 원천징수세율 ㉠_{1,2,3,4}: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원천징수 단계 공제금액’) ※ 현행 규정과 유사하게 시행령 제정 예정 ㉠_{1,2,3,4}의 한도: ㉠_{1,2,3,4}

□ 개정안은 연금계좌 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요건을 갖춘 소득 또한 원천징수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대상임을 규정하여, 연금계좌 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요건을 갖춘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원천징수 단계에서 배당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조건을 갖춘 소득에 대해서만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³³⁾ 이

33)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⑤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할 때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제5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로 인해, 원천징수 단계에서 연금계좌 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조건을 갖춘 소득은 별도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³⁴⁾

또한, 개정안에 따를 경우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조건을 갖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특례가 적용되어야만, 종합소득신고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따르는 공제금액의 정확한 계산이 가능해짐. 현행법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³⁵⁾ 시행령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과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의 대소를 비교하여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방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9. 삭제

34) 현행법 상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은 퇴직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특례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35) 「소득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에 대한 계산은 원천징수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특례가 적용된 것을 전제로 그 산식이 도입되어 있으므로,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조건을 갖춘 소득이 원천징수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신고 단계에서 계산된 공제금액이 정확히 산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개정안은 “원천징수 단계 공제금액”을 환산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므로, 개정안에 따를 경우,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요건을 갖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단계에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의 규정은 필수적임.

이에 개정안은 원천징수 단계에서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연금, 기타, 퇴직, 이자소득³⁶⁾ 중 간접투자외납요건을 갖춘 소득(이하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에 대해서도 각각 원천징수세액 및 그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을 규정하여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하는 모든 소득이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천징수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원천징수 단계에서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 중 이자, 퇴직, 연금,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값에서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단계 공제금액”을 뺀 값을 원천징수

36) 이는 간접투자 소득지급 시점이 아닌 연금의 소득 인출시점에 따라서 원천징수 되는 연금계좌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상기된 바와 같이, 수령 방법 및 소득의 원천에 따라서 그 소득의 특성이 구분됨.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천징수 단계 공제금액”의 한도는 원천징수 단계에서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 중 이자, 퇴직, 연금,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값(이하 “연금계좌인출공제한도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개정안은 연금계좌인출공제한도금액에 대응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단계 공제금액”의 한도는 “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으로 그 용어를 신설하고 있음.

[연금계좌 인출 소득의 원천징수 규정 신설 효과]

구분	계좌	투자 구조도	간접투자 외납공제
현행	일반 계좌		가능
	연금 계좌		불가
개정안	연금 계좌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식 규정]

개 정 안
☐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 (대상)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에 간접투자 소득이 포함된 경우 ○ (공제방식) 공제적립액 누적 후 연금계좌 인출 등으로 발생하는 세액에 공제 적용 - (공제액 적립)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발생 시 공제적립액 계산* 및 누적 합산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발생시마다 외국납부세율을 14%로, 국내세율을 9%로 간주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적립액으로 누적 관리 ** 공제적립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times (\frac{9\%}{14\%} - 9\%)$ - (공제적용) 연금계좌 인출 또는 계좌이전*으로 세액 발생 시마다 해당 세액에서 공제적립액을 차감 * 근로자 퇴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계좌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주1: 정부는 해당 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할 것이라는 입장임. 자료: 2025년 세제개편안

연금계좌 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식과 관련하여, 정부는 연금계좌의 상품 특성을 고려하여 이른바 ‘크레딧’ 형태로 연금계좌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연금계좌의 실제 과세는 인출 시점에 이루어지는 구조를 감안한 것으로,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시점과 국내 과세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임. 즉, 외국납부세액을 즉시 공제하지 않고 계좌 내에 적립해두었다가 인출 시점에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과세시기 불일치에 따른 왜곡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구체적으로, 정부는 연금계좌 운용단계에서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발생 시 공제적립액을 계산 및 누적 합산한 후 연금계좌 인출³⁷⁾ 등으로 발생하는 세액에 대해서 해당 공제적립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입장을 밝혔음.

-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요건을 갖춘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의 적용례는 다음과 같음.

적용례
(정부안)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의 공제 및 연금계좌 인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 2025년 1월 1일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연금계좌로 지급되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의 공제방식에 대한 적용방식 변경 :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김영진의원안) 2025년 1월 1일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연금계좌로 지급된 소득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소득을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정부안은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요건을 갖춘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간접투자 회사등으로부터 연금계좌로 지급되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소득에 대해서부터 적용하고,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의 적용방식 변경은

37) 또는 계좌이전(근로자 퇴직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계좌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이전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려는 것으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요건을 갖춘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세액공제를 소급하여 적용하려는 것임. 이는 현행 방식(방식Ⅲ)이 2025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연금계좌 소득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급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

□ 이와 더불어 정부는 ISA 계좌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도를 개선하였음.³⁸⁾

그러나 연금계좌 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요건을 갖춘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개정안과 같이 소급조항을 두어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한 ISA계좌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요건을 갖춘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2025년 하반기부터의 ISA 계좌로부터의 간접투자 소득이 공제대상일 뿐,³⁹⁾ 2025년 상반기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해 상품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⁴⁰⁾ 한편, 정

38)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둘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회사등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 하고,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하여 계산한다.

39) 부칙 [대통령령 제35349호, 2025. 2. 28.]

제12조(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17조의2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8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 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17조의2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추계에 따르면, ISA계좌에 대한 소급 적용 배제로 인한 계좌당
외국납부세액공제 손실액은 85원임.

[계좌 유형별 해외펀드 투자 현황]

(조 원, %)									
연도	국내	해 외							
		합계		일반		ISA		연금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2023	644.7	326.7	100.0	318.1	97.3	1.3	0.5	7.3	2.2
2022	555.9	296.4	100.0	288.7	97.4	1.0	0.3	6.7	2.3
2021	544.2	287.7	100.0	278.4	96.8	1.0	0.3	8.3	2.9
2020	483.4	236.8	100.0	230.2	97.2	0.4	0.2	6.2	2.6

‘24년 국세청이 지급한 해외펀드 등의 외국납부세액 先환급액 2,134억
→ 계좌별 해외펀드 투자비중에 단순 적용할 경우
- 연금계좌 47.7억원, ISA계좌 4.2억원 (일반계좌는 2,076억원)

* 동 금액을 계좌 수로 나누면 계좌당 연금 460원, ISA 85원원의 이중과세 발생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 개정안의 형식과 관련하여 정부안은 연금계좌 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요
건을 갖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각각의 소득 특성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
나, 김영진의원안은 현행 조문을 일괄적으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공제금
액을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정부안과 같이 각 소득의 특성에 따라 그
계산방식을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법률 규정의 명확성을 높여 납세자
의 이해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8

40) 조선비즈 “ISA는 안되는데 연금계좌는 된다?...외국납부생개공제 소급적용 두고 ‘논란’”, 2025.8.17.